

CISG 제3편 물품의 매매

제1장(제25조~제29조) 총칙



원광대학교

유 하상

UN물품매매협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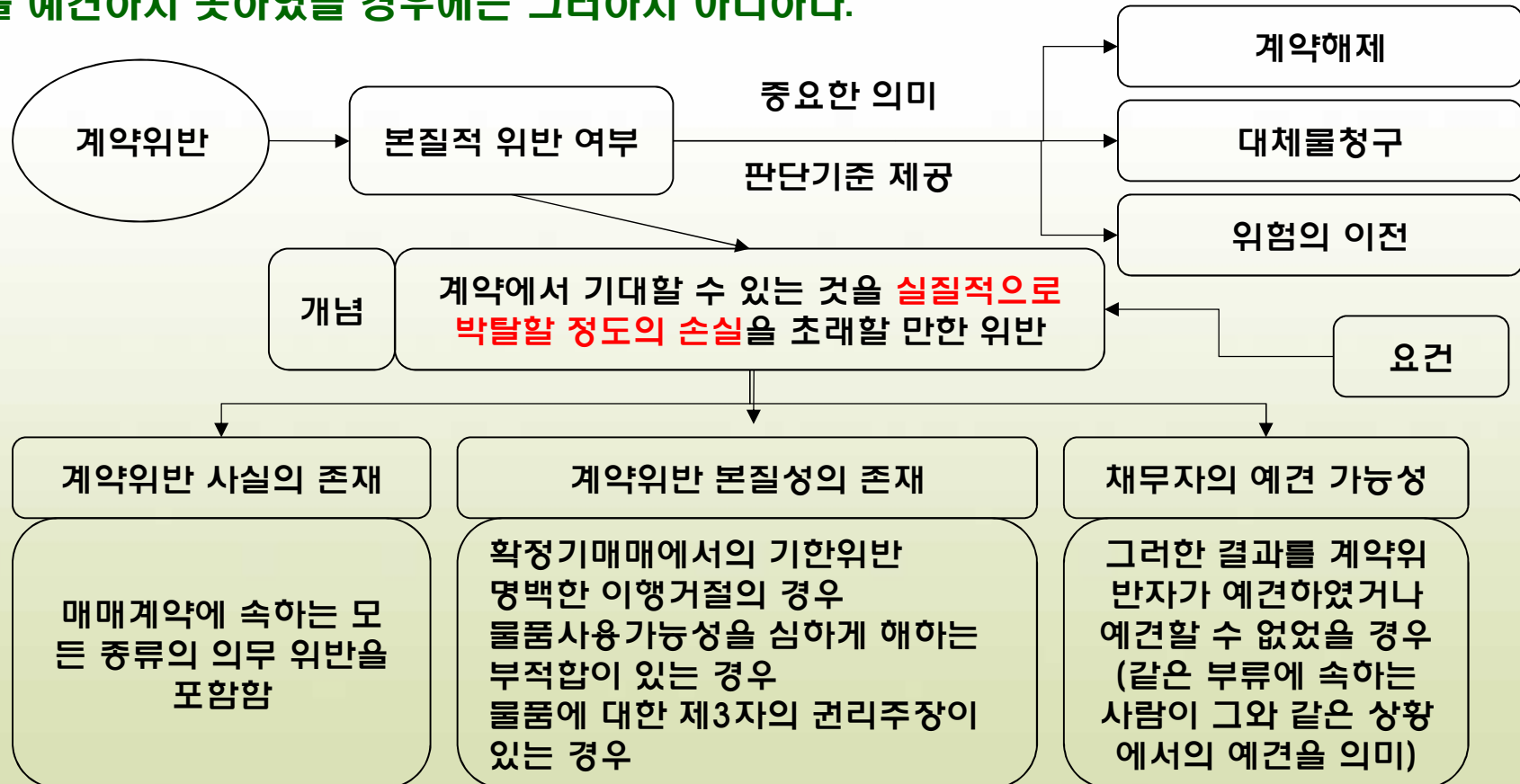
CISG 제3편 물품의 매매

제1장(제25조~제29조) 총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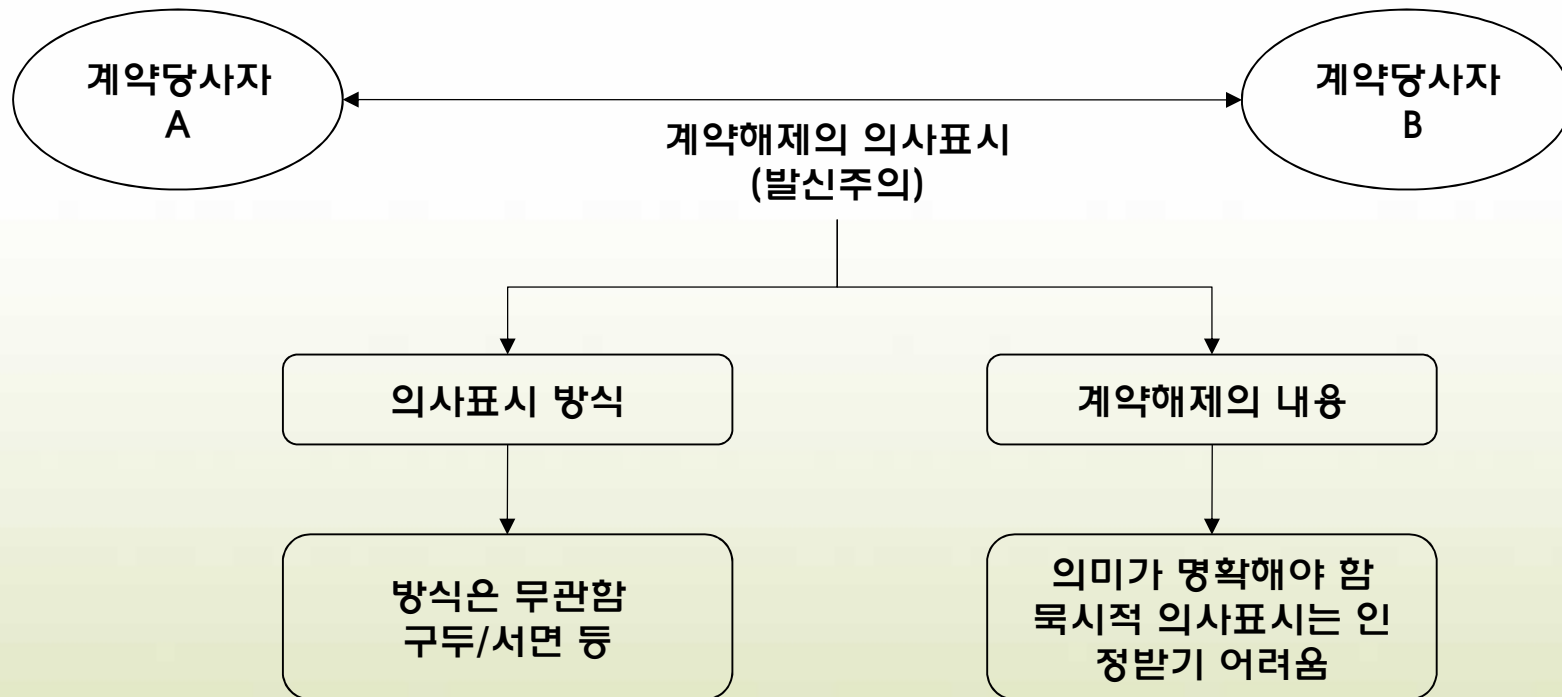
■ 본질적 위반의 정의(제25조)

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. 다만 위반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,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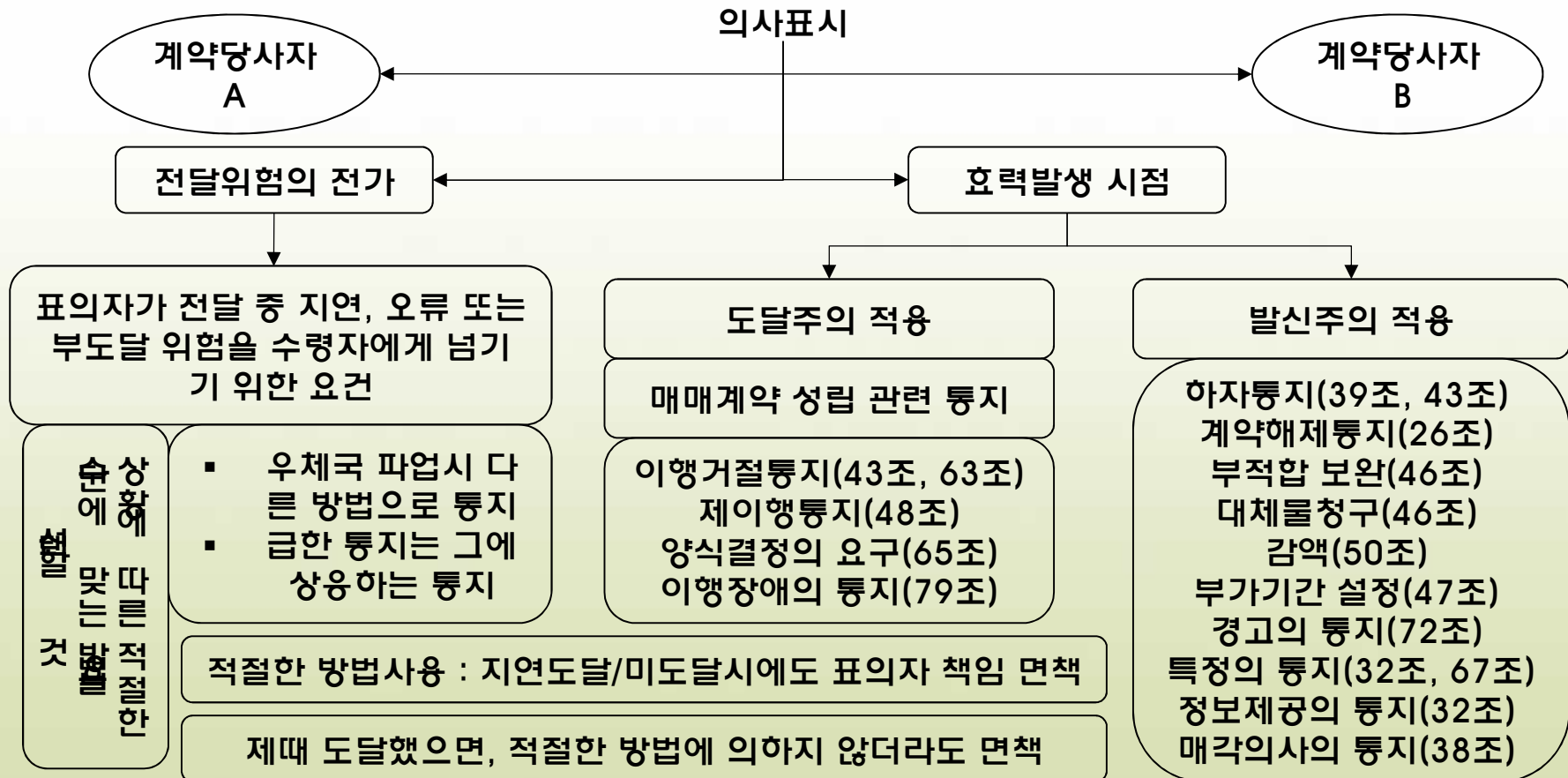
■ 계약해제의 통지(제26조)

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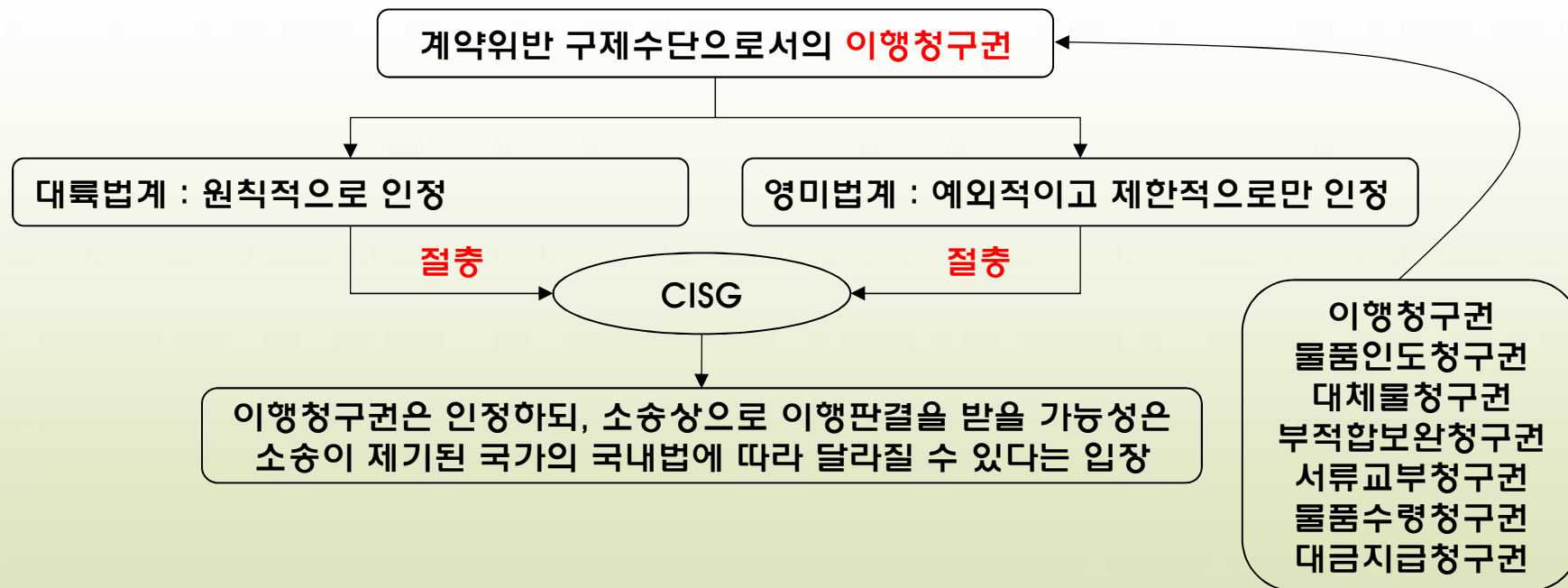
■ 통신상의 지연과 오류(제27조)

이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당사자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, 청구 그 밖의 통신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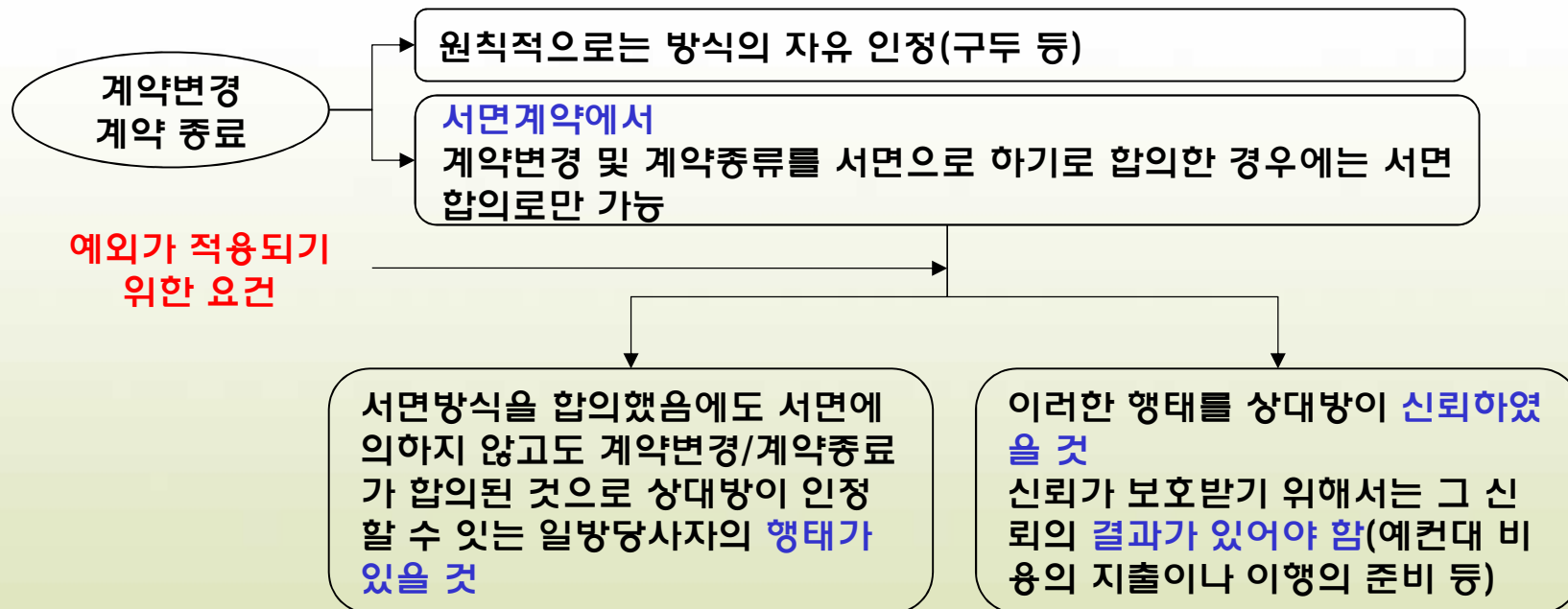
■ 특정이행과 국내법(제28조)

당사자 일방이 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이 협약에 규율되어 있지 않은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국내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의무가 없다. [다시 말해 이런 때는 개별국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.]



■ 계약변경 또는 합의종료(제29조)

- (1)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.
- (2)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변경 또는 종료를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서면계약은 다른 방법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없다. 다만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을 상대방이 신뢰한 범위까지는 위의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.





감사합니다